

서울서부지방법원 2022. 10. 5 선고 2021가단222603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유병연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2. 9. 7.

판 결 선 고 2022. 10. 5.

주 문

1. C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/7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2019. 1. 11.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9,803,675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.
2. 피고는 원고에게 9,803,67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근거

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, 제150조 제3항)

판사 김진희

별지